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19,600,000	36,588,000
일반회계	1,004,000,000	30,120,000
특별회계	215,600,000	6,468,000
공기업특별회계	142,600,000	4,278,000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89,200,000	2,676,000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53,400,000	1,602,000
기타특별회계	73,000,000	2,19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690,000	20,7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900,000	327,0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410,000	42,3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80,000	191,400
치수사업특별회계	1,400,000	42,0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500,000	45,000
청소사업특별회계	48,180,000	1,445,4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040,000	61,200
수질개선특별회계	500,000	15,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액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930,98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7,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와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보수,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직무수행경비
3. 배상금, 국선번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재해대책비 및 복구경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경비